

## 자원보호홍보

#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해설

수산청 연근해과

수산기좌 최 용 철

### 0. 머리말

·어업생산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약 탈어업적 생각을 지양하고 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어업을 해야 한다는 관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세기에는 해양에서의 고기는 무진장하다고 주장하고 어업의 규제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후에 어로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새로운 자원이 점차 개발됨으로써 무제한 어업으로서 그 발전이 촉진되어 왔으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어종에 따라서 난획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자원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삼면이 바다로서 이 바다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있음으로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 낼 수 있다고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업도 1960년부터 어업생산에 크게 주력하여 어선 규모의 증대와 어구어법 개량등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각각 2.6배의 높은 증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은 생산 수출면에서 세계의 상위권 수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기 등 일부처서 어종은 자원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수산물 생산면에서도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같이 수산자원은 무진장한 자원이 아니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우리 어민들도

이제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세계의 수산 여건도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를 맞아 1970년대 중반부터는 각 연안국들이 다투워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동수역을 자국의 영토화 하고 있으며 1982년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10년간의 논란끝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적용받던 경제수역의 개념이 국제법에 의거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서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되며

·따라서 현재 139개 전 연안국이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세계의 전 해양의 약 35%가 연안국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 주변 연안국들도 모두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우리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우리의 연근해 어장과 자원이 한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어장에 대한 자원 보호가 절실히 요청된다.

## 1. 수산자원 보호

### 0. 수산자원의 특수성

○어장과 자원의 한정성

·해양은 넓으나 실제 어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어장은 어업의 방법에 따라 한정된다.

해저가 굴곡이 심하고 암반으로 구성된 장소는 저인망어업의 어장이 될 수 없고 조류나 해류가 빠른 곳은 유자망이나 연승어업의 어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법에 따라 어장이

한정되고

·수십이나 수온 해류의 종류등 해황 여건에 따라서 어류의 회유범위와 서식처가 상이하어 어업별로 조업어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근년에 와서는 각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등으로 어장 면적까지도 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어장과 자원이 한정되므로서 최대지속적인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어획량도 한정되어 궁극적으로 어획노력량마저도 제한을 받게 된다.

○자원회복의 장기성

·수산자원은 어류, 조류, 패류, 기타 수산동물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해조류를 제외한 어류나 패류등 대부분의 자원은 성장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한번 자원이 감소되거나 고갈되는 경우에는 그 회복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이동성이 전혀 없는 패류나 회유성이 아닌 저서어류 및 하면이나 동면하는 종류등은 어획노력을 강화하면 자원은 일시에 고갈되며 때로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어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연안에서 점차 외연으로의 어장확대

·수산업의 작업장은 해양으로서 해황이나 기상등 해양의 여건에 따라 어업경영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어업은 태풍이나 폭풍등 기상악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어장 거리에 따라서 어업경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민들은 안전조업과 어업경영면을 고려하여 가까운 연안어장부터 집중적으로 조업을 하게 되고

·또한 해황여건 변동으로 어느 일정 해역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다수 어선이 집중적으로 조업하여 일시에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업별로 조업구역을 정하여 어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연근해 신어장 개발의 한정성

·그간 연근해어업은 어선의 대형화와 어선척수의 증대 및 어구어법의 발달에 따라 연근해어장은 기하 개발되어 더 이상의 개발 여지가 희소하다.

·뿐만 아니라 인접 연안국들의 경제수역 선포로 어장면적마저도 한정성에 놓이게 되어어선의 증대나 어획량의 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원보호 및 자원조성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의 수산자원보호 강화

·세계의 수산업도 모두 자국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하여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 자국의 영토화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어업기술이 미개발 국가에서도 타국에 입어료를 받고 어획쿼타를 할당하여 어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어업기술을 습득하여 머지않는 장래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규제할 것을 예상할 때 우리 원양어업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각종 국제수산기구에서도 특정어업이나 어종에 대하여 어획을 규제 내지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토록 조치한 바도 있어

·이러한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자원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자원보호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방법 복잡

·수산자원은 어획시 한가지 어업에서 한가지 어종만 어획되지 않고 여러가지 어종이 혼획될 뿐만 아니라 한가지 어종도 여러종류의 어업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조업하는 어장도 어업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규모도 다양 각색일 뿐만 아니라, 어업은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하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률적인 목표 설정은 곤란한 점이 많다. 따라서 자원보호 관리면에서의 어업정책 결정은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Ⅱ. 수산자원 보호 관리방법

·일반적으로 어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질적인 것으로는 어기, 구역, 어법을 제한하거나 어획어의 체장, 체중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며 양적인 것으로는 어선수 또는 조업회수 등의 노력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총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법등이 있다.

○어업의 질적 규제

·어법중 치어가 많이 혼획되기 쉬운 삼중자망이나, 세망(일명 모기장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이나 기선형망 저인망등 어획강도가 높고 어장 환경을 파괴하기 쉬운 어업 또는 어업경영상 불필요한 낭비어법을 규제하고

·자원의 생식 생태와 관련 재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서의 특정 어종의 암컷 채포금지

·산란기간 산란수역의 보호를 위한 금어기 금어구역의 설정

·소형어의 어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어업별로 어망목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등이 있다.

○어업의 양적 규제

·수산자원은 어선 어구등 어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어획량이 증가되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므로 어군의 조성이나 량에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어획어가 소형화 되고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저하되며 결과적으로는 노력량을 증가시켜도 어획량은 같은 수준이거나 또는 감소된다.

·이와같이 수산자원에 대하여 실제 어획을 개시하면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저하되고 소형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지므로 어업자는 더욱 어획강도를 높이고 어망목을 적게 하므로서 결국 어획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므로 어획량을 제한 하거나 어선 어구등 어획노력량을 적정량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획노력량과 생산량 관계에 있어서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호방법은 수산자원의 특수성에 따라 어업의 질적, 양적 보호방법을 병용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보호령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다.

2. 수산자원 보호 제도

Ⅰ. 수산업법

·이 법은 수산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으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중요 내용은 수산업은 면허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구, 어법과 폭발물 유독물등 유해어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안의 중요산란장이나 종패발생장 및 성육장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어업자에 대한 벌칙과 어업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수산자원 보호령을 제정 운용토록 하고 있다.

Ⅱ. 수산자원 보호령

·이 령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에 수산업이나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1970 년도에 별도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어업여건의 변동에 따라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 보완 하였고 특히 최근 1982년에는 1976년 개정 이후에 국내외 어업여건이 크게 변동되어 보호령 전반에 대한 개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유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선의 선폭이 커지고 어로장비가 현대화되어 일부 업종의 어획강도가 증대되므로서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중 일부 자원들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업은 어장의 원격화와 유가인상 등으로 어업경비는 증가되고 단위노력당 생산량은 감소되어 어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200해리 경제수역 문제가 최종 결정되어 인접국들의 경제수역 설정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임해공단 및 도시의 발달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와 대단위 간척사업등에 의한 연안어장 축소등으로 우리 수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지속적인 최대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 어선척수와 조업구역, 치어 자원보호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추진경위

·수산자원 보호령은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민이 영위하는 어업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자원보호의 측면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기존 어업자의 어업경영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 1980년부터 시·도 및 수진, 수협 등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1981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시·도, 수진, 수협, 학계, 업계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종합 검토하여 1982.11.13자 개정되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요개정내용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기선선인망, 잠수기, 트롤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을 조정하고

·최근 조업척수와 어선의 규모 및 어로장비의 과학화로 어획강도가 높은 반면 대상자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대형기저, 트롤등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 정한수 신설,

·연안에서 젓새우, 실치, 까나리등을 채포하기 위하여 모기장같은 새망을 사용하는 일부 어업은 각종 어류의 “알”이나 “치어”가 다량 혼획되고 있어 “알”이나 “치어”가 많이 발생하는 일정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였으며

·소형기저등 법령규정에 없는 부정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이용을 위하여 일부어종에 대한 채포금지기간,채포금지체장, 어망목등을 신설 또는 조정 보완하였다.

□. 수산자원 보호령 주요내용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질적, 양적인 규제를 병용하여 종합적인 자원보호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어업의 조업금지구역

·기선저인망 트롤 형망등 저인망류와 안강망등은 어업규모와 어획강도가 크며 조업어장이 주로 수심이 낮은 연근해의 어족 산란장이나 서식장에서 조업을 하게 되므로 산란 서식장을 황폐화 할 우려가 있고

·일본조 연승 통발 등 소규모 어업과의 어장 중복으로 조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기선저인망 근해트롤 중형기선저인망 기선선인망 유자망 안강망 범선저인망 기선형망 어업등은 연안에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자원보호령에 명시된 금지구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어망목의 제한

·어망의 망목은 어획물의 크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은 어체가 가장 큰 것을 잡는 경우 생산량 증대는 물론 상품가치를 높이므로서 어획금액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어류가 성어가 되어 최소한 1회 이상 산란한 후에 잡히게 되므로 자원 보호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므로

·연안의 산란, 서식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이나 어획강도가 큰 어업 또는 중요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어망의 망목 크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자원보호는 물론 생산량 증대 및 상품가치의 제고를 위하여도 보호령에 규정한 망목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표1 참조)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수산자원은 어종에 따라서 산란이나 서식에 적당한 수온과 환경이 필요하므로 해역별로 산란장 또는 서식장소가 정하여지나, 대부분은 “알”이나 “치어”가 유영력이 없으므로 수심이 낮고 유속이 없으며 해조류등이 많이 번식하는 연안이나 내만등에서 산란, 성장하므로

(표 1)

○ 어망목의 제한 (제 6조)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저인망, 조망, 선인망과 제 3종 공동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 : 망목내경 15  
밀리미터 이하
2. 범선저인망 : 낭장의 망목내경 25밀리미터 이하
3. 중형기선저인망 : 낭장의 망목내경 33밀리미터 이하
4. 대형기선저인망, 트롤 : 낭망의 망목내경 54밀리미터 이하
5. 삼치유자망 : 망목내경 100밀리미터 이하
6. 고등어, 전갱이선망 : 망목내경 30밀리미터 이하
7. 이중이상 자망 : 내망의 망목내경 40밀리미터 이하
8. 안강망 : 낭망 망목내경 30밀리미터 이하
9. 동해구트롤 : 낭망 망목내경 43밀리미터 이하

· 어획강도가 큰 어업이나 중요한 자원을 잡는 어업에 대하여는 산란, 서식장에서의 산란, 서식 기간중에는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연안에서 세망 (일명 모기장그물)을 사용하여 젓새우 까나리 실치등을 잡는 낭장망, 주목망, 해선망, 연안안강망 등은 어획물중에 각종 어류의 “알”이나 “치어”가 다량 혼획되고 있어 자원이 채 크기도 전에 마구 잡아 버리므로서 자원보호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 이들 어업에 대하여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큰 과제이나 어민들의 생업을 감안하여 해역별로 각종 어류의 “알”과 “치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중에서 동·남해안은 5.16 ~ 6.15, 서해안은 6.16 ~ 7.15 1개월만 금어하고 있으므로

· 어민들은 우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연안의 어장과 자원을 스스로 보호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채포금지 기간

· 수산자원은 종류별로 산란적 수온이 있으며 바다의 수온은 한류와 난류의 영향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므로 어종별 계절별로 산란기간이 있다.

· 따라서 자원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산란기에 산란용 “치어”를 보호하여 산란량을 증대시키므로서 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 특히 이동성이 없는 정착성 자원이나 전체 자원량이 적고 이용면에서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당해 어종의 산란기간중에 채포를 금지하고 산란한 연후에 잡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우리 어민들은 생활에 쫓겨 부득히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 되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산란후에 결국 우리가 잡는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 “대구” 자원만 보더라도 1960년대 이전에는 연간 3만여 톤이나 잡히던 것이 그이후 점차 감소되어 근년에 와서는 1천 ~ 4천여톤에 불과하여 자원은 최저 수준에 와있다.

· 정부에서는 대구의 산란장인 진해만의 산란기간중에 금어기를 설정하고 자원회복을 위하여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진해만의 일부 어민들은 금어기 해제 또는 단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잡아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어업자체를 포기하여야 할 것을 감안할 때

· 우선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어기를 잘 지켜서 산란량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자원 조성으로 하루속히 자원이 회복되어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참조)

(표 2)

○ 채포 금지기간 (제 9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은 다음의 기간중 채포하지 못한다.

1. 은 어 : 9.16 ~ 10.16 (강원도 : 8.1 ~ 9.30)
2. 대 구 : 12.1 ~ 1.31 (경남, 부산)
3. 연 어 : 10.1 ~ 12.31
4. 잉 어 : 5.1 ~ 6.30
5. 해 삼 : 7.16 ~ 10.15
6. 진 복 : 9.1 ~ 10.31
7. 대 계 : 6.1 ~ 10.31
8. 툫 : 10.1 ~ 1.31
9. 황감태, 붉감태 : 1.1 ~ 6.30 (제주)
10. 키 조 개 : 6.1 ~ 9.15
11. 자 라 : 6.1 ~ 8.31
12. 꽃 계 : 7.1 ~ 8.31 (기저, 트롤, 안강망 제외)
13. 우무가사리 : 11.1 ~ 4.30
14. 도박류 (진도박, 먹도박) : 10.1 ~ 4.30
15. 돌 닭 새우 : 5.1 ~ 8.31
16. 빨 닭 새우 : 6.1 ~ 8.31
17. 담 수 새우 : 7.1 ~ 7.31
18. 빙 어 : 3.1 ~ 3.31
19. 쏘 가 리 : 6.1 ~ 7.31

○ 채포금지 체장

· 수산자원도 어느 동물과 같이 그 종류에 따라서 어느 크기에 달하면 생식능력을 갖게 된다. 이와같이 생물학적 최소형의 크기를 기준으로 채포금지 체장을 정하여 대상자원이 자라서 최소한 1회이상 산란한 후에 잡도록 하므로서 자연상태에서의 산란량을 증대코저 하는 것으로서

· 채포금지체장을 정한 종류는 자원이 쉽게 감소할 수 있는 정착성이나 전체 자원량이 적은 중요한 자원이며

· 이는 자원보호 측면은 물론 어획물의 크기에 따른 상품가치 제고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표 3 참조)

○ 알, 치어 및 암컷의 채포금지

· 수산자원은 종류에 따라서는 “알”이나 “치어” 시기가 맛이 있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성계”는 “알”만을 식용으로 이용하며 대구나 명태의 알젖은 우리나라에서 고래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참조기등은 알이든 굴비가 인기가 있다.

· 따라서 어민들은 가급적이면 산란직전의

(표 3)

○ 채포금지체장 (제 10 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수산동물로서 다음의 체장 이하의 것을 채포하지 못한다.

1. 붕 장 어 : 35 센티미터
2. 송 어 : 12 "
3. 진 복 : 7 " (오분자기 제외)
4. 새 꼬 막 : 5 "
5. 소라고동 : 5 " (제주산 6센티미터)
6. 대 계 : 12 "
7. 자 라 : 9 "
8. 피 조 개 : 7 "
9. 방 어 : 20 "
10. 돌 닭 새우 : 5 " (두홍갑장)
11. 쏘 가 리 : 18 "
12. 잔 천 어 : 18 "
13. 재 칩 : 1 "
14. 말 조 개 : 9 "

알을 가진 어미를 채포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들 자원이 산란한 “알”이나 “치어” 등은 유영력이 없어 바람이나 조류에 밀려 다니므로 어민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또는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된다.

· 우리 어민들은 앞으로 “알”을 가진 어미 고기가 잡히거나 “알”이나 “치어”가 잡힐 때에는 이를 방류해서 자원보호에 솔선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

· 수산자원은 무진장한 자원이 아니다. 우리 연근해자원은 특히 저서 자원들은 이제 한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 연근해어업의 어획량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다.

· 수산업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주인없는 넓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지않고,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정한수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들 한다.

· 그러나 어업허가 정한수의 설정은 그 목적이 한정된 자원량에 대하여 적정 노력량을 투입하므로써 자원의 감소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최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 연근해어업 중 어업의 규모와 어획강도가 크고 대상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허가 정한수를 설정 운용하고 있다.

3. 맺 는 말

· 우리나라 수산업은 과거에는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연안에서 자연산 패조류 채포와 소형어선에 의한 소규모 어업 위주의 영세어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 1960년대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계획 추진으로 선진어업 기술의 도입과 어선, 장비의 현대화로 수산물 생산은 크게 증대되어

세계 상위권 수산국으로 발돋움 하였고

· 1970년대에는 60년대의 어업기술과 현대화된 어선, 장비등을 기반으로 연안에서는 양식어업이 어선어업은 어장이 점차 외연으로 확대되어 우리 수산업이 일대 도약기를 맞이 하므로써 1979년의 수산물 생산은 2,422천톤으로 1960년에 비해 무려 7배의 증산을 하였다.

·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수산업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임해공단 및 도시의 발달로 인한 공장폐수와 도시 하수의 대량유입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대규모 간척사업실시로 연안어장은 축소 되었으며

· 근해어업은 그동안 발달된 어업기술로 어획강도가 높아져 일부 저서자원은 감소 경향에 있고 대외적으로도 인접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으로 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연근해어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 어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령은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므로써 수산물의 지속적인 최대생산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 우리 어민들도 오늘 하루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불법어업을 솔선하여 근절하고

· 우리 바다를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지켜서 풍요로운 바다로 가꾸워 나갈 때 우리의 소득은 증대되고 살기좋은 어촌이 건설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끝 -

